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13
----------	-------

발의연월일 : 2026. 5. 11.

발 의 자 : 권향엽 · 김현정 · 진성준
민병덕 · 박지혜 · 문금주
송재봉 · 최민희 · 전현희
곽상언 · 오세희 · 이용선
이광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의 영위가 가능하지 않은 시설을 부동산 임대업 영위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입주자는 거짓에 의한 모집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을 작성할 때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확인 서명 등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집적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식산업센터에서 부동산 임대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말한다)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해당 문서를 제공 받았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8조의4제6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6의2. 제28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6의3. 제28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산업센터 관련 문서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 ④ (생략) <u><신설></u></p> <p><u><신설></u></p>	<p>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식산업센터에서 부동산 임대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말한다)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해당 문서를 제공 받았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u> <u>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u></p>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6.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신 설>

<신 설>

7. ~ 11. (생략)

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 -----

-----.

1. 제28조의4제6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8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의3. 제28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 1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